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향입법 등으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1419호) 및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1418호)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업무처리 혼선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현행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전액관리제 및 운송비용전가금지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해 특별관리대상을 선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법령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지자체 신고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0조)
- 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운영계획에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여객터미널 및 관광지 등 주요교통시설에 운행조치, 전용승차대 설치 및 택시 외부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및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면허·인가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하며, 면허·인가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택시구분”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관청은”을 “시·도지사는 매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차종”을 “택시구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관할관청 이”를 “시·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통보 받은 운영계획의 개요를 전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함께”를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당해년도 운영계획과 직전년도 운영계획 이행실적을”로, “통보하여야 하며”를 “제출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4. 지역별 운행형태별 이용요금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할지역 내 택시수요 및 실차율 등의 운행여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이 운행되도록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수립 한 운영계획과 관할지역내”를 “관할 지역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과 주요 여객터미널 및 관광지 등에 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등과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 시설
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③ 관할관청은 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 역 및 터미널 등에는 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고급형”을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으로, “차종 및 운행형태별로 구분하여”를 “택지구분에 따라”로, “정하되, 모범형 택시에 대하여는 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운전자의 복장)”을“(운수종사자의 복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자”를 “운수종사자”로 한다.

제18조의 제목“(운전자 교육)”을“(운수종사자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운전자”를 각각 “운수종사자”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운전자”를 “운수종사자”로 한다.

제2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관청은 법 제21조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업체로 선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실정에 맞게 신고센터 등

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운수종사자의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자별”을 “운수종사자별”로 한다.

3.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병과 하도록 한다.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병과 하도록 한다.

제25조 중 “2026년 10월 31일”을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폐지한다.

1.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2.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관할관청</u>”이라 함은 <u>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면허 · 인가권 등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말한다.</u></p> <p>2. “<u>차종</u>”이라 함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으로서 경형 택시 · 소형 택시 · 중형 택시 · 대형 택시 · 모범형 택시 및 고급형 택시를 말한다.</u></p> <p>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u>관할관청</u>은 택시제도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u>차종 및 운행형태별 운행대수 및 운행시기</u></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u>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u>를 말하며, 면허 · 인가권 -----.</p> <p>2. “<u>택지구분</u>”이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u>」(이하 “<u>규칙</u>”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u>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구분</u>을 말한다.</p> <p>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u>시 · 도지사는 매년</u> ----- ----- ----- -----.</p> <p>1. <u>택지구분</u> ----- -----</p> <p>2. (현행과 같음)</p>

<신 설>

<신 설>

3. 기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해
관할관청 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사항

② 제2조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통보 받은 운영계획의 개요를
전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추진실
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추진이 완
료된 때에는 이를 즉시 통보하
여야 한다.

<신 설>

3.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
자 준수사항

4. 지역별 운행형태별 이용요금

5. -----
-- 시·도지사가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지사는 시장 등이 제출한 의견
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장 등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당해년도 운영계획과 직
전년도 운영계획 이행실적을 -

-----제출하여야 하
며-----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4조(지도·조정)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수립한 운영계획과 관할지역내의 택시제도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도·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운영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할지역 내 택시수요 및 실차율 등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이 운행되도록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지도·조정) ① -----
관할 지역내-----

-----.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과 주요 여객터미널 및 관광지 등에 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등과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 시설
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

<신 설>

제12조(택시의 표시) ① 관할관청은 택시(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의 외부표시 및 표시등의 색상 등을 이용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차종 및 운행형태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표시방법 및 내용 등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되, 모범형 택시에 대하여는 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③ 관할관청은 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 역 및 터미널 등에는 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택시의 표시) ① -----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
----- 택지구분에 따라 -----

----- 정한다.

② (생략)

제16조(운전자의 복장)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장을 지정한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제복착용 상태를 점검한 후 승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운전자 교육) ① (생략)

②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운전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하되, 관할관청 및 사업자 등은 교육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하여 운수종사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범죄예방등) ① (생략)

② 관할관청은 운전자의 신변보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운수종사자의 복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운수종사자-----

-----.

제18조(운수종사자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운수종사자-----

-----.

③ -----
-- 운수종사자-----

-----.

제19조(범죄예방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운수종사자-----

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시의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등록운행중인 택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확인하는 필증 등을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불법행위 단속등)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제22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전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가중 또는 감경 등에 관한 세부

제20조(불법행위 단속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할관청은 법 제21조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업체로 선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관청의 실정에 맞게 신고센터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처분) ① -----
----- 운수종사자의
관계 법령 -----

처분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정한다.

1. 삭 제

3.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8
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
운전자격의 정지처분을 병과
하도록 한다.

<신 설>

-----.

3.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
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87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
소 또는 정지처분을 병과 하
도록 한다.

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
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운수종사자
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
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택시운송사
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
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
운전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
분을 병과 하도록 한다.

② 관할관청은 행정처분 현황을 사업자별, 운전자별로 구분 관리하여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의 가중처분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
----- 운수종사자별 -----

-----.

제25조(유효기간) -----

----- 2028년
10월 31일-----.